

성북구립 석관실버복지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성 북 구
(어르신 · 장애인복지과)

성북구립 석관실버복지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의안 번호	404
----------	-----

제출년월 : 2025. 2.
제출자 : 성북구청장

1. 제안이유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둔 현재 지역 어르신들의 맞춤형 여가복지서비스 및 다양한 사회참여활동 연계 등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위탁 운영 중인 성북구립 석관실버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이 2025.06.30.자로 종료됨에 따라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법인 등에 위탁하여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3항에 의거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대상 현황

- 시설명 : 성북구립 석관실버복지센터
- 위치 : 성북구 화랑로32길 88(석관동)
- 규모 : 821.2㎡(지1층 / 3층)
- 개관일 : 2009. 7. 1.

나. 위탁기간 : 2025. 7. 1. ~ 2030. 6. 30.(5년)

다. 위탁방법 :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성북구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라. 위탁사무의 범위 : 센터 관리·운영 및 사무 전반

- 어르신 맞춤형 여가복지서비스(상담, 사회교육, 기능회복사업 등) 지원

- 지역사회활동(지역기관 참여, 지역복지사업 등) 발굴 및 연계
- 외부사업 공모·참여 및 다양한 특화 프로그램 개발 제공
- 기타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우리구가 요청하는 사항

마. 신청자격

- 서울시에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3.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실버복지센터 사업의 능률성 극대화와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하여 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 내실화 도모

4. 향후계획

-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사 : 2025. 4.
- 협약체결 : 2025. 5.

5. 관계법령 등

가.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나.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 4.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 타당성 및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③ 구청장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장관 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할때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5조(민간위탁사무 내용)

- 1.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 2. 자활·취업·창업지원을 위한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 3. 문화·예술·영상·도서관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 4. 교육·교양·체육·공원 관련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 5. 보건·건강증진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 6. 사회적기업, 공정무역, 마을만들기 지원시설의 운영 및 관련 사무
- 7. 보훈 회관 운영 및 관련 사무
- 8. 그 밖에 청소, 경비, 교통, 주차장 운영 등 단순행정 관리 사무